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일반인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851
----------	-----

2012년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결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2일 회부

다. 상정결과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2년 6월 21일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에이즈예방홍보 및 교육(일반인 교육) 사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3조제1항에 의거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특별시 지회에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사업으로서,
-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사무 개요

- 사무명 : 서울특별시 에이즈예방홍보 및 교육(일반인 교육)
- 위탁법인 :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특별시지회
 - 지 회 장 : 이 경 루
 - 소 재 지 :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74-28 한국오피스2034호
 - 시설규모 : 사무실 8평(후원), 직원 3명
 - 설립년도 : 1994. 12. 1.
- 위탁기간 : 2010. 1. 5 ~ 2012. 12. 31(3년간)

(2)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2013. 1. 1 ~ 2015. 12. 31)
- 위탁업무
 - 에이즈 예방 교육, 홍보, 상담사업
 - 노인, 성매개 감염 우려자 집단 강연
 - 동성애자 상담 및 검진을 제공
 - 에이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청소년 동료 교육사업
 - 외국인 상담, 검진 및 지원
 - 에이즈 국제교류 및 상호협력 지원 사업
 - 기타 연맹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등
- 소요예산 : 190,000천원 (2012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재계약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가. 위탁의 근거와 위탁 사무의 범위

-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 사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및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제1항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민간단체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동법 제23조 제2항을 근거로 위탁하고 있음.

- 즉 위탁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이며, 구체적으로는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사무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사무의 범위가 됨.
- 그런데 본 동의안의 위탁사무의 내용을 보면 ‘동성애자 상담 및 검진’, ‘외국인 상담, 검진 및 지원’, ‘에이즈 국제교류 및 상호협력 지원 사업’ 등의 사무를 위탁사무로 삼고 있는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사무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

- 물론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은 법령상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으나, 동 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시설운영에 관한 사무나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에 국한

되는 것으로써, ‘동성애자 및 외국인 상담, 검진 및 지원’ 이나 ‘에이즈 국제교류 및 상호협력 지원 사업’ 등의 사무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참 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 따라서, 현재 서울시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 사무의 상당부분이 법적 근거 없이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함.

나. 현행 위탁사무의 분석

- 서울특별시 에이즈예방홍보 및 교육(일반인 교육) 사무는 현재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특별시 지회가 위탁받아 수행 중인 사무로써, 위탁 업무의 내용 중 “기타 연맹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서울특별시 지회는 모두 민법상의 법인으로, 서울시가 설립하거나 설치한 기관이 아니므로 ‘연맹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등’을 서울시의 위탁업무로 삼는 것은 법적 근거 여부를 떠나 처음부터 위탁이 허용되지도 않고, 서울시의 사무가 아니므로 위탁을 할 수도 없는 것임.
- 또한 법령상 규정된 사무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무로서, 이를 굳이 “보건의료인 교육”과 “일반인 교육”으로 나누어 각각 서로 다른 수탁기관에 위탁할 이유 내지 필요성이 분명치 않음.
 -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1993년 설립된 ‘대한에이즈협회’가 모체가 되어 발전한 단체이고,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역시 1993년 설립된 ‘한국에이즈예방운동본부’가 모체가 되어 발전한 단체로써,
 - 그동안 수행한 사업내용과 단체의 연혁을 살펴보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있어서 (사)대한에이즈예방협회가 보다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무’를 굳이 “보건의료인 교육”과 “일반인 교육”로 나누어 위탁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다. 결 론

- 서울시가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일반인 교육)사무’〈의안번호 851〉는 법령에 맞게 위탁사무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위탁사무의 범위가 축소할 경우 예산 또한 감액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구분하여 위탁되고 있는 ‘보건의료인 교육사무’와 ‘일반인 교육사무’는 하나로 통합하여 적절한 수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에이즈예방홍보 및 교육(일반인 교육) 사무의 위탁사무의 범위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 에이즈예방홍보 및 교육(일반인 교육) 사무의 위탁업무의 범위를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로 수정함.

7. 심사 결과 : 수정가결 (재석위원 전원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일반인 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51
----------	-----------

2012년 6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에이즈예방홍보 및 교육(일반인 교육)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851>에서 실시하고 있는 위탁사무의 내용이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사무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어, 서울특별시 에이즈예방홍보 및 교육(일반인 교육) 사무의 위탁사무의 범위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에이즈예방홍보 및 교육(보건의료인 교육) 사무의 위탁업무의 범위를
 - “- 에이즈 예방 교육, 홍보, 상담사업
 - 노인, 성매개 감염 우려자 집단 강연
 - 동성애자 상담 및 검진을 제공
 - 에이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청소년 동료 교육사업
 - 외국인 상담, 검진 및 지원

- 에이즈 국제교류 및 상호협력 지원 사업
- 기타 연맹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등”에서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로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기타사항 : 없 음